

제26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

의원 발의 조례안
(2건)

거창군의회

- 목 차 -

의안번호	건 명	쪽수
2023-20	거창군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	1
2023-21	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	5

거창군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재운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23-20
----------	---------

발의일자	2023. 2. 27.
발 의 자	이재운, 이흥희, 박수자, 김홍섭, 표주숙, 신재화, 신중양, 김향란, 최준규, 신미정, 김혜숙

1. 제안 이유

마을 공동이용 시설물 지원 규모를 확장하여 주민들이 시설물을 이용하고 유지관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명 변경함

나. 지원대상을 마을공동이용시설물에서 마을회관으로 변경(안 제2조~제5조)

다. 지원금액을 확대함(안 제5조)

1) 원칙: 1천만원 이내 ⇒ 2천만원 이내

2) 예외: 붕괴 또는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

라. 준용, 시행규칙 삭제(안 제9조·제10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,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

나. 예산조치 : 필요 시

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복지정책과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

나) 예고결과 :

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3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명 “거창군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 조례”를 “거창군 **마을회관** 지원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마을 공동이용시설물의 이용과 유지”를 “**마을회관의**”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마을회관”이란 마을 **주민들이 집회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**

제3조제1항·제2항, 제4조제1항·제2항 중 “마을 공동 이용시설물”을 “**마을회관**”으로 **각각** 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지원대상) ① 사업비 지원 대상은 제2조의 **마을회관**의 유지 관리 및 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단위당 사업비가 **2천만원** 이내인 소규모 사업을 그 대상으로 한다.

② **제1항에도 불구하고** 군수가 붕괴 또는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제1항 중 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”를 “별지 서식에 따라”로 한다.

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거창군 <u>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마을 공동이용 시설물의 이용과 유지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시설물의 종류) 이 조례에서 관리하는 마을 공동 이용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마을회관, 경로당 등 주거용 건물 2. 놀이터, 쉼터 등 마을 휴게 시설물 3. 공동 창고, 공동 주차장 등 마을 편의 시설물 4. 기타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물 <p>제3조(시설물의 관리) ① <u>마을 공동 이용시설물은 마을 이장이 책임 관리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마을 공동 이용시설물은 마을 주민의 후생복리를 위해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4조(지도·감독) ① <u>군수는 마을 공동이용시설물이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고 유지 관리 하도록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군수는 마을 공동이용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5조(지원대상) <u>사업비 지원 대상은 제2조의 마을 공동 이용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단위당 사업비가 1천만 원 이내인 소규모 사업을 그 대상으로 한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p>	<p>거창군 <u>마을회관 지원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마을회관의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<u>마을회관</u>”이란 <u>마을 주민들이 집회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</u></p> <p>제3조(시설물의 관리) ① <u>마을회관은 마을 이장이 책임 관리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마을회관은 마을 주민의 후생복리를 위해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4조(지도·감독) ① <u>군수는 마을회관이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고 유지 관리 하도록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군수는 마을회관의 유지 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5조(지원대상) ① <u>사업비 지원 대상은 제2조의 마을회관의 유지 관리 및 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단위당 사업비가 2천만원 이내인 소규모 사업을 그 대상으로 한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붕괴 또는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

제6조(사업의 신청) ① 시설물의 정비를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② 마을 이장은 사업비 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마을의 지도자 등과 협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
제9조(준용) 지원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본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「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를 준용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6조(사업의 신청) ① 시설물의 정비를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② 마을 이장은 사업비 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마을의 지도자 등과 협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
<삭 제>

<삭 제>

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
(김홍섭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23-21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일자	2023. 2. 27.
제 출 자	김홍섭, 이홍희, 박수자, 표주숙, 신재화, 신중양, 김향란, 최준규, 이재운, 신미정, 김혜숙

1. 제안이유

실제 출장 사유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칙의 적용범위를 실수요에 맞도록 개정하여 출장의 목적 및 근거를 명확히 하고 내실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이 규칙을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 범위확대(안 제2조)

1) 현행: 거창군수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

2) 변경: 중앙정부, 거창군수,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

또는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

나. 연임제한 신설(안 제4조)

다. 용어순화, 인용 조례명칭 등 정비(안 제4조·제6조·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 근거: 「지방자치법」 제52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집행부의견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 사항

1) 입법예고: 해당사항 없음

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3) 비용추계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중앙정부, 거창군수,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회장협의회장 또는 경남시군의회회장협의회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

제4조제4항 중 “연임”을 “한 번만 연임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“2/3”를 “3분의 2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「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”을 “「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.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.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. <u>거창군수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</u> <p>5. 본회의 또는 「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」의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</p> <p>6. 그 밖에 거창군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</p> <p>제4조(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설치)</p> <p>①~③ (생략)</p> <p>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<u>연임</u>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이 소속된 분야에서 이직 등 신분변동이 있을 경우, 의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후임위원을 새로 위촉 한다.</p> <p>⑤ 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<u>2/3</u> 이상이어야 한다.</p> <p>⑥~⑧ (생략)</p>	<p>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.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.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. <u>중앙정부, 거창군수,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또는 경남시군의회협의회회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</u> 5. 본회의 또는 「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」의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. 그 밖에 거창군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<p>제4조(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설치)</p> <p>①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<u>두 번만 연임</u>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이 소속된 분야에서 이직 등 신분변동이 있을 경우, 의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후임위원을 새로 위촉 한다.</p> <p>⑤ 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<u>3분의 2</u> 이상이어야 한다.</p> <p>⑥~⑧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6조(회의)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<u>1인</u>을 두되,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이 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8조(수당 및 여비)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<u>거창군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</u>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6조(회의)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<u>1명</u>을 두되,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이 된다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수당 및 여비)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<u>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</u>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